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8. 21 선고 2017가단6421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론 종결 2018. 8. 7

판결 선고 2018. 8.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인도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나공화국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짓고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 1) 이 사건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 2) 원고는 2007. 3.경 귀국하면서 피고 B에게 선교목적사업을 할 것을 부탁하며 이 사건 토지의 임차권을 증여했다. 이후 피고 B은 D선교회를 설립해 이 사건 토지의 임차권을 증여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
- 3)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일 뿐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기준

국제사법 제2조가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71915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모두 가나공화국에 있고, 그 준거법도 국제사법 제19조1)에 의해 가나공화국의 법이 되는 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권리를 가지는지, 피고 B에게 그 권리를 증여하였는지 등이라 할 것인데, 관련 법률관계 역시 모두 가나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원하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나공화국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은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정왕현

별지

1) 제19조(물권의 준거법)

- ①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